

28, 1, 73

자 체 종 제	이 경 남 가 만 차	과 외 관 장	전화번호	229	근 거 서 류 접 수 일 자
감 정 담 임	유 파 장	관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69				
분 류 기 호	1731.26	전 체 통 계	종 결		정 서 기 장
경 수 참 유 선 조			발 신		
제 목	택시미터제 실시공고				
<p>1. 1963. 4. 20 택시미터제 실시공고 이래 3차에 걸쳐 동 불배량을 완화 그부족을 위한 관계로 승합자동차 관리 차질을 초래하고 자는 물론 근래 영항용 택시여 있어 택시미터 미부족 및 고장으로 인한 승객의 불편과 비용이 크므로 불만공고 등을 다음과 같이 도당 자신부서에게 공고하고 시민에게 주지시킴 으라 본제도실사의 실효를 기양코려함.</p>					
<p>가. 공고문 (불안과 같은) 나. 기재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2개사) 다. 소모예산액</p>					



~~전등 교체~~ ~~등기~~ 등기 교체

$50W \times 50 \text{ 개} \times 3 \text{ 단} = 7,500W$ (4실) W 개
 $40W \times 50 \text{ 개} \times 3 \text{ 단} = 6,000W$ (4실) W
 ~~$7,500 \times 2 = 15,000W$ (4실) W~~

다. 지붕 방수

청구에 의함

마. 지붕 과부

(가) 원상 복구비

(나) 분담비

(다) 아음 및 수로

(라) 수로

첨공고안 끝

특수기타부착에 관한 공고

근래 영업용 택시에 있어 특기타 부착 및 고장으로 인한 승객의 불편과 차내 크로로 오염정도에 의해 영업용 택시 전차량에 특기타를 부착하여야 한다.

요 령

1. 새나라자동차 신등록차량에 대하여
가. 새나라영업용택시 신등록차량은 차량탑비봉인권까지 반드시 특기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운행중인 새나라 자동차에 대하여
가. 새나라자동차중 특기타 부착대상은 1963. 7월말까지 부착완료하여야 한다.
3. 새나라 이외의 영업용 택시에 있어 타타기 부착차량은 1963. 8월말까지 전부 부착완료하여야 한다.
4. 특기타 고장차량은 자체설이 고장또는 수선하여야 한다.
5. 1963. 8. 1부터 새나라자동차 특기타 부착대상 차량에 운행정지한다. 새나라 이외의 영업용 택시

1963. 9. 1 부터 귀국하여 ~~은~~ 귀국한다.
우공고학

1963. 7. 15
귀국한다. 은 대는

1-1

196

인민공화국

12